

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강 선 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63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0년 6월 일

발 의 자: 강선영, 송영섭, 윤유선, 김현희
이의걸, 송순호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체내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 활동지원이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- 나. 대한적십자사 조직 용어를 정의함.(안 제2조)
- 다.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.(안 제3조~제4조)
- 라. 표창 관련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)
- 마. 시행규칙 근거를 규정함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21조, 제22조, 제23조

나. 협조부서: 자치행정과

다. 입법예고: 2020. 6. 5. ~ 2020. 6. 9.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대한적십자사(이하 “적십자사”라 한다) 조직”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활동 지원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
2.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
3. 보건의료·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
4.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

5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
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
-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.

제4조(보조금의 지급)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의 신청, 집행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표창)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**대한적십자사 조직법**

제21조(사업계획의 제출 등)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(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)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용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·세출결산서에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사업 재원의 조성)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